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을 위하여 반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허권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특허증 발급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허권자에게 발급하는 특허증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납부서 제출 없이도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15. ~ 4.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발급”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을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자(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10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의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의6제2항 중 “국제출원의 출원서”를 “국제출원의 출원서, 보정서 또는 추가 신청서”로 한다.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6을 각각 제120조의3부터 제120조의7까지로 하고,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① 법 제2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할 수 있는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서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2.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에 관한 서류
3. 거절이유통지서,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
4. 그 밖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반출하려는 경우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3조 중 “제120조의2제1항”을 “제120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6호나목 중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중 【신청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청 구분】
-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전자문서)
 - 특허(등록)증 재발급
 -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 등록원부기록사항 발급
 - 자료복사
 -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
 - 등록원부 발급
 - 자료열람
 - 서류등본(초본) 발급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중 신청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 구분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전자문서),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
등록원부 발급, 등록원부기록사항 발급, 자료열람, 자료복사, 서류등본(초본) 발급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이 난은 등록원부 발급, 등록원부기록사항 발급, 자료열람, 자료복사 또는 서류등본(초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7호가목 중 “특허(등록)증 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을 “특허(등록)증 재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특허(등록)증 정정발급(전자문서) 및 재발급(전자문서)의 경우에는 【e-메일】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e-메일】

별지 제29호의2서식 앞쪽 중 【신청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청 구분】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전자문서)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중 신청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 구분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전자문서),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전자문서) 및 재발급(전자문서)의 경우에는 【e-메일】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e-메일】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보정(보완, 정정, 추가)내용】란에는 보정, 보완, 정정 또는 추가할 내용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필요에 따라 “별지 사용”이라고 적고 해당 내용을 별지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주장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보정내용】란의 다음 행에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을 만들어 보정 전·후의 내용을 적으며,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추가내용】란의 다음 행에 【선출원 출원일】 , 【선출원번호】 및 【선출원국가】란을 만들어 추가되는 우선권주장 관련 내용을 적습니다.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신청 시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우선권서류 송달】란을 만들어 신청 의사를 적습니다.

[예 1] 【보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예 2] 【추가내용】

【선출원 출원일】

【선출원번호】

【선출원국가】

[예 3] 【보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우선권서류 송달】 신청

별지 제41호의2서식 뒤쪽 기재요령 카목1)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제8기재란 (i)~(v)의 각 선언서”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적으며, 성명과 주소, 국적, 거주국을 적을 경우 반드시 영문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1호다목 중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51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0조(특허증의 발급)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u>발급</u>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특허증(이하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u>발급</u>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제51조(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p>	<p>제50조(특허증의 발급) ①----- ----- ----- ----- ----- <u>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u>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u>---.</p> <p>1. ~ 8. (현행과 같음)</p> <p>제51조(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① ----- ----- ----- ----- ----- ----- ----- ----- ----- ----- -----</p>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제50조의3에 따른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재발급신청

②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발명자 등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④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3. -----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

②-----
----- 자(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재발급 신청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6조의6(우선권서류의 제출) ① (생략)

② 대한민국에 제출한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

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

---.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의6(우선권서류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제출원의 출원서, 보정서 또는 추가 신청서

의 취지를 적거나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생 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2(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① 법 제2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할 수 있는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서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2.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에 관한 서류
3. 거절이유 통지서,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
4. 그 밖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이 필요하다

<p>제120조의2 ~ 제120조의6 (생략)</p> <p>제123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서류</p> <p>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반출하려는 경우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20조의3 ~ 제120조의7 (현행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6까지와 같음)</p> <p>제123조(규제의 재검토) ----- -- 제120조의3제1항----- ----- ----- ----- ----- ----- ----- ----- ----- ----- --.</p>
--	---